[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10100535]

홍익돈까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1.11.10.] www.hongikdonkatsu.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6.03.04.]

[홍익돈까스]

정 보 공 개 서

[(주)홍익]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홍익]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29, 2층]
[대표전화 : 1600-6585]
[팩스 : 031-283-3117]
[가맹사업담당 : 1600-6585]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4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7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1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2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8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35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36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39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40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홍익	홍익돈까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29, 2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06.18.	2013.07.01	이영일	1600-6585	031-283-3117
	법인등록번호	134811-0272899	사업자등록번호	135-86-3384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영일 (주)홍익	홍익돈까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29,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일	1600-6585	031-283-311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우열 (주)홍익	홍익돈까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29,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일	1600-6585	031-283-311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중화인민공화국인 취엔샤오찡 (주)홍익	홍익돈까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29,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일	1600-6585	031-283-311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홍익돈까스]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홍익돈까스	
상 호	홍익돈까스 OO점	
상표(서비스표)	弘益 홍익돈까스	등록번호 : 제40-1472298호
상표(서비스표)	HONGIK H.I DONKATSU	등록번호 : 제40-1552845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홍익돈까스는 20년 점포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홍익(널리 이롭게 함)의 뜻에 따라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와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직한 경영과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 메뉴개발을 통해 가맹점주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3,117,338	1,201,661	1,915,677	3,001,345	428,770	243,219
2023년	2,924,739	885,129	2,039,610	3,312,251	230,261	123,934
2024년	3,028,808	1,084,147	1,944,661	3,376,413	59,768	55,051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영일	대표이사	2010.4.~2013.6.	홍익돈까스 대표	업무총괄
			2013.7.~현재	(주)홍익 대표이사	
	이우열	이사	2016.3.~현재	(주)홍익 이사	가맹사업
	취엔샤오찡	감사	2022.3.~현재	(주)홍익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1	1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홍익	가맹사업 경영	2023.12.~현재	범골(등록번호: 20231877)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홍익돈까스 (상표권)	-	2018.11.14. 출원 2019.04.23. 등록	출원 제2018-0158037 등록 제40-1472298	㈜홍익	2029.04.23.
HONGIK H.I DONKATSU (상표권)		2019.07.26. 출원 2019.12.11. 등록	출원 제2019-0116286 등록 제40-1552845	㈜홍익	2029.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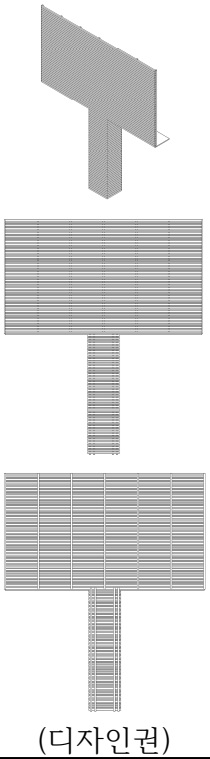 (디자인권)	-	2013.6.4. 출원 2014.4.15. 등록	출원 제2013-0029050 등록 제30-0739990	㈜홍익	2029.4.15.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홍익돈까스] 가맹사업 현황

1. 〔홍익돈까스〕를 시작한 날 : 2011년 2월 1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0년 4월 30일)

2. 〔홍익돈까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홍익돈까스	홍익돈까스	이영일	2011.2.14. ~2013.6.30.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45-7
(주)홍익	홍익돈까스	이영일	2013.7.1. ~2016.3.21.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3길 36-15(반송동)
(주)홍익	홍익돈까스	이영일	2016.3.22. ~ 현재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29, 2층

3. 〔홍익돈까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홍익돈까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서양식	돈까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홍익돈까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4	93	1	89	88	1	89	88	1
서울	2	2	-	2	2	-	3	3	-
부산	3	3	-	3	3	-	3	3	-
대구	5	5	-	5	5	-	5	5	-
인천	5	5	-	5	5	-	5	5	-
광주	3	3	-	3	3	-	2	2	-
대전	2	2	-	1	1	-	1	1	-
울산	3	3	-	3	3	-	3	3	-
세종	1	1	-	1	1	-	1	1	-
경기	37	36	1	33	32	1	31	30	1
강원	4	4	-	4	4	-	5	5	-
충북	2	2	-	2	2	-	2	2	-
충남	7	7	-	7	7	-	7	7	-
전북	5	5	-	5	5	-	5	5	-
전남	4	4	-	4	4	-	4	4	-

경북	6	6	-	6	6	-	7	7	-
경남	3	3	-	3	3	-	3	3	-
제주	2	2	-	2	2	-	2	2	-

5. 바로 전 3년간 [홍익돈까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95	2	3	1	12	93
2023	93	1	3	3	12	88
2024	88	3	3	0	6	88

6. [홍익돈까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홍익돈까스]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홍익	범골	20110100535	한식	0/1	0/1	1/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홍익돈까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 당	
전체	88	718,530	12,621	1,123,659	23,006	113,591	5,119	87곳 산정
서울	3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3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5	838,662	15,041	931,306	18,626	768,298	11,641	5곳 산정

인천	5	799,166	13,970	946,744	18,207	552,284	7,994	5곳 산정
광주	2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1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3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30	712,578	12,670	1,040,858	18,668	113,591	6,353	30곳 산정
강원	5	758,246	12,634	985,967	17,607	565,819	8,968	5곳 산정
충북	2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7	708,976	12,288	904,284	21,030	558,047	9,359	7곳 산정
전북	5	763,089	13,482	910,456	16,554	656,983	10,423	5곳 산정
전남	4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7	557,905	8,949	682,848	10,821	371,158	7,423	6곳 산정
경남	3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2	해당없음						5곳 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개 가맹점(영천점) 매출액은 1년 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88개가 아닌 실제 87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8. [홍익돈까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홍익돈까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88	295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홍익돈까스]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홍익돈까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6]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52,145	(비공	-	
광고		(비공개)	25,697	(비공	-	
판촉		(비공개)	26,448	(비공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동탄사랑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33 덕천프라자 2층	031)8003-507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해당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홍익'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계약 시 보다 구체적인 예치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홍익돈까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점포선정작업 착수, 착공	
교육비	5,500	계약 체결 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 시작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현금)보증금	5,000	계약 체결 시	미지급금,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1,500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보증금	5,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75,770~ 177,970]				50평 기준(면적, 구조, 개별협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필수설비 등의 금액은 [면적당 금액 × 면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며 면적당 금액은 추가 평형에 대한 추정치일 뿐입니다.
필수설비(정착물)	가맹본부	53,670	1,073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내부공사)	가맹본부	115,500	2,31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가맹본부	3,300~5,500	66~110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비 (식자재제외)	가맹본부	3,300	66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도시가스, 화장실공사, 닥트, 냉난방설비, 수도시설, 지주간판, 철거비용, 전기증설공사, 외부공사 등)은 총계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3,500천원(도면, 시방서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시공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점포의 형태 등)하고 가맹희망자의 요청과 협의에 의하여 선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5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홍익돈까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 분할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11,000				최초 3년간 무료, 계약갱신비 포함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				26p 참고, 광고 시행 시 부담
판촉분담금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후 결정	교육 실시 10일 이전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필요시 협의 후 진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 후 결정	협의 후 결정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3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무료 사용
지연이자	㈜홍익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물품대금 등의 지급기한을

			지급하는 날까지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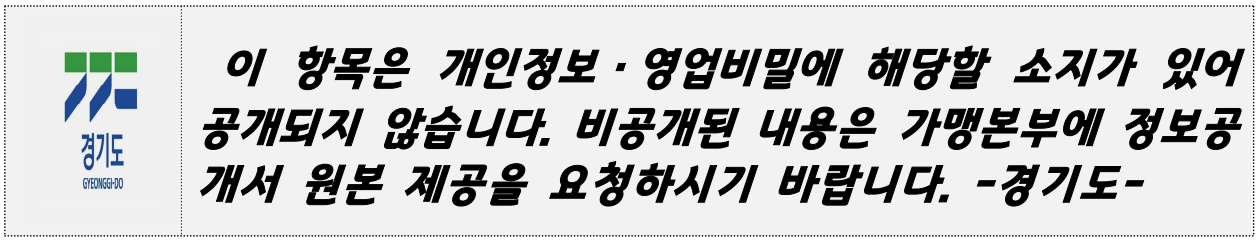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1600-6585)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3년분 로열티 포함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상표 사용료	11,000	계약 종료일 10일 이전 까지			3년분 일시납 계약갱신비 포함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

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홍익돈까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북 등 기타 홍익돈까스의 저작물 및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일체의 상징이나 표시물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홍익돈까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첨 2]와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홍익돈까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단위:천원)	비고
주식회사 어울림로지스	계열회사		***(비공개)***	***(비공개)***

특수관계인의 연간 매출액입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홍익돈까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홍익돈가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홍익돈까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레시피를 변경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로스까스			
로스까스세트			
돈까스정식			
생선까스정식			
고구마치즈롤까스			
고구마치즈롤까스세트			
치즈롤까스			
치즈롤까스세트			
세트A			
세트B			
해물볶음우동			
베이컨볶음우동			
홍익우동			
소 우동			
냉우동			
까르보나라			
더블치즈돈까스			
스파이시까르보나라			
해물크림파스타			
해물토마토파스타			
토마토치즈파스타			
로제파스타			
알리오올리오			
새우볶음밥			
불고기볶음밥			
사이드콤보			
안심까스			
안심까스세트			
모둠까스			
모둠까스세트			
로제돈까스			
볶음짬뽕			
쉬림프볼			
순살치킨			
사이드콤보			
함박돈까스			
치즈까스			
등심카레			

안심카레			
카레추가			
자몽에이드			
레몬에이드			
오렌지에이드			
핑크레몬에이드			
홍익도시락1호			
홍익도시락2호			
홍익도시락3호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홍익돈까스	14,000	서면이나 전화, 포스로 통보	2025년 4월 기준
로스까스	13,000		
로스까스세트	14,500		
돈까스정식	13,000		
생선까스정식	13,000		
고구마치즈롤까스	13,000		
고구마치즈롤까스세트	14,500		
치즈롤까스	13,000		
치즈롤까스세트	14,500		
세트A	12,500		
세트B	12,500		
해물볶음우동	13,000		
베이컨볶음우동	12,000		
볶음짬뽕	13,000		
홍익우동	6,000		
소 우동	3,500		

냉우동	8,500		
까르보나라	14,000		
더블치즈돈까스	14,500		
스파이시까르보나라	14,000		
해물크림파스타	15,000		
해물토마토파스타	15,000		
토마토치즈파스타	14,000		
로제파스타	15,000		
알리오올리오	14,500		
새우볶음밥	10,000		
불고기볶음밥	10,000		
사이드콤보	5,000		
안심까스	13,000		
안심까스세트	14,500		
모둠까스	14,500		
모둠까스세트	17,000		
로제돈까스	14,500		
볶음찜뽕	13,000		
쉬림프볼	4,000		
순살치킨	4,000		
사이드콤보	5,000		
함박돈까스	12,500		
치즈까스	13,000		
등심카레	12,500		
안심카레	13,000		
카레추가	4,000		
자몽에이드	4,500		
레몬에이드	4,500		
오렌지에이드	4,500		
핑크레몬에이드	4,500		
홍익도시락1호	13,900		
홍익도시락2호	14,000		
홍익도시락3호	13,9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돈가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홍익돈까스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 활용가능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홍익돈까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홍익돈까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8.6%	1.4%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홍익돈까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보증금, 식자재 및 물품대금, 로열티, 기타 용역 제공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6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6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26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6조 1항
○ [홍익돈까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26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6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금, 보증금, 식자재 및 물품대금, 로열티, 기타 용역 제공비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7조 1항
○ “갑”의 요구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의 원,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자체 제작하여 영업하는 경우.	27조 1항
○ “갑”이 제공하는 장비, POS시스템, 상품, 유니폼, 간판 및 매장 내 외부 홍보물, 전단지 등 기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매뉴얼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7조 1항
○ 음식 조리매뉴얼(RECIPE)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하여 영업하는 경우.	27조 1항
○ 대금 결제가 1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27조 1항
○ “갑”의 동의 없이 7일이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	27조 1항
○ “갑”의 동의 없이 점포의 위치 이전, 양도를 한 경우	27조 1항
○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7조 1항
○ “갑”의 동의 없이 수량한정 판매 등을 실시한 경우	27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7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27조 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7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27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	27조 2항

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27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7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27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7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환매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

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통지→당사 담당자검토(상속인 면담, 14일 가량 소요)→상속인과 가맹본부의 권리승계계약 체결(5일 소요)→상속완료	교육비 납부 및 교육 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당사 담당자 검토(대리인 면담, 14일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	교육비 납부 및 교육 수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위탁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당사 담당자 검토(대리인 면담, 14일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	교육비 납부 및 교육 수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홍익돈까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돈까스나 파스타, 우동이 메뉴에 포함 된 요식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1600-6585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홍익돈까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10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문의:1600-658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6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현장지도	1회/월	매장담당	빈도 변경 가능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현장지도	1회/월	매장담당	빈도 변경 가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홍익돈까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해당사항 없음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등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등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

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본사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허락된 시안 및 내용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8조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존속 중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홍익돈까스'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양도 및 상호변경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가맹접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9조(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사에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및 해지 이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

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액으로 1일당 금이십만원(₩200,000원)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채무를 보증금으로서 정산할 수 있으며 차액, 추가적 손해, 법무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45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10p~13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1일)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60~59(2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50~46(5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5(1일)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44(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44~43(2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2(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42~3(4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4~3(2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

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구기의 교체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신규개점 지원	가맹점 오픈 시 운영지원인력 파견	없음 (전 가맹점 해당)	5일간	-	2명 파견
판촉지원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판촉물 지원	가맹본부의 개별 판단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가맹본부의 개별판단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신 메뉴 출시 등의 사유로 인해 가맹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교육 및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가맹점 부담	문의: 1600-6585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1600-6585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홍익돈까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로열티 지원	최초 3년간 로열티 면제	모든 가맹점	계약일로부터 3년 간	로열티 면제	변경될 수 있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홍익돈까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조리방법, 식자재관리방법 등	실습교육 개별,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장비 사용, 신메뉴 조리교육 등	필요시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홍익돈까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1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6인 이상 참여해야 함
보수 교육	1일	협의 후 결정	필요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계약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오픈 전 점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점일 전까지 귀하와 해당 종업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 개점이 교육수료 이후로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7조에 따라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홍익돈까스 동탄본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2길 37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8년 10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890,185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의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담당(1600-658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현황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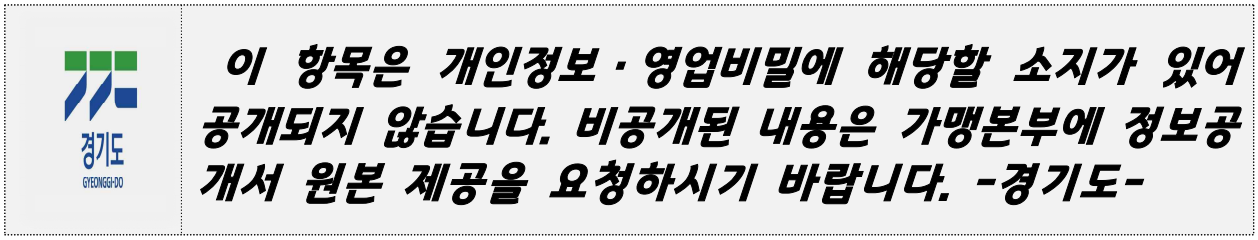

[별첨 2]

원·부재료 및 설비·집기 내역(2025.04. 기준)

*상/하한은 2024년도 실제 공급가격의 구간일 뿐 현재의 가격과는 무관합니다.
*품목/규격/가격 등은 수시로 증감 및 변경 됩니다.

